

문서번호 : 26-678

발신일자 : 2026.09.04

수 신 : 수신처참조

참 조 : 투자상품부

제 목 :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의 건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귀사(행)에서 판매 중인 다음 펀드의 투자설명서가 첨부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협조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대상 투자신탁 및 주요 변경 내용

펀드명	주요 변경 내용
카디안 골드리치특별자산투자신탁 [금-파생형]	- 최근 결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 - 최근 결산일 기준 수익률 변동성 변경

2. 변경시행 예정일(효력발생 예정일) : 2026 년 9 월 11 일

※ 첨부: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각 1 부.
변경대비표 1 부. 끝.

[수신처]

DB 증권, KB 증권, NH 농협은행, SC 제일은행,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우리은행,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투자증권, 흥국증권

카 디 안 자 산 운 용 (주)
대표이사 사장 김 상 준



문서번호 : 26- 571

발신일자 : 2026.07.27

수 신 : 수신처참조

참 조 : 투자상품부

제 목 : 투자자산 비중 변경에 따른 업무 협조 요청의 건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판매 중인 카디안 미국뱅크론특별자산투자신탁(H)[대출채권-재간접형]의 모펀드 신탁계약서가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협조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대상 펀드: 카디안 미국뱅크론특별자산모투자신탁(미달러)[대출채권-재간접형]

•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외화대출채권 및 외화대출채권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 구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u>60% 이상으로</u> 한다. 다만, 미국 달러화 표시 외화대출채권 및 외화대출채권 관 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 액의 <u>60% 이상으로</u> 한다.	외화대출채권 및 외화대출채권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 구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u>50% 초과로</u> 한다. 다 만, 미국 달러화 표시 외화대출채권 및 외화대출채권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u>50% 초과로</u> 한다.

• 효력발생일: 2026 년 9 월 11 일

• 근거 및 취지: 본 변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0조에서 정한 집합투
자기구 유형별 최소 투자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펀드의 투자목적, 주된 투자전략 또
는 집합투자기구의 유형을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운용방침과 투자철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운용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투자자산의 최소 편입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수신처]

DB 증권, IBK 기업은행, IBK 투자증권, 국민은행, KB 증권, KDB 산업은행, NH 농협은행, NH 투자증권, SK 증권, SC 제일은행,
경남은행, iM 은행,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 부산은행, 삼성생명, 삼성증권, 상상인증권, 신영증권,
신한투자증권, 신한은행, 우리은행,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LS 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하나은행, iM 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차증권, 흥국증권

카 디 안 자 산 운 용 (주)
대표이사 사장 김 상 준



문서번호 : 26- 592

발신일자 : 2026.07.27

수 신 : 수신처참조

참 조 : 투자상품부

제 목 : 투자자산 비중 변경에 따른 업무 협조 요청의 건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판매 중인 카디안 미국뱅크론특별자산투자신탁(미달러)[대출채권-재간접형]의 모펀드 신탁계약서가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협조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대상 펀드: 카디안 미국뱅크론특별자산모투자신탁(미달러)[대출채권-재간접형]

•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외화대출채권 및 외화대출채권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u>60% 이상으로</u> 한다. 다만, 미국 달러화 표시 외화대출채권 및 외화대출채권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u>60% 이상으로</u> 한다.	외화대출채권 및 외화대출채권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u>50% 초과로</u> 한다. 다만, 미국 달러화 표시 외화대출채권 및 외화대출채권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u>50% 초과로</u> 한다.

• 효력발생일: 2026 년 9 월 11 일

• 근거 및 취지: 본 변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0조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 유형별 최소 투자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펀드의 투자목적, 주된 투자전략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유형을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운용방침과 투자철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운용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투자자산의 최소 편입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수신처]

국민은행,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카 디 안 자 산 운 용
대표이사 사장 김 상 준

